

베드로특전 [Privilegium Petrinum, Petrine Privilege]

■ 개요

교황의 사도적 권한 내에서 합법적인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천주교 신앙의 특전(privilegium fidei).

■ 본문

바오로 특전과 마찬가지로 이 특전 역시 세례와 관련이 있다. 교회가 선교활동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선교활동이 확대되어 가는 동안 교회의 가르침과 상치되는 복잡한 부부관계를 가진 자들이 입교하는 사례를 접하게 되자 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세 번의 교황령을 발표하게 되었다.

첫번째의 베드로 특전은 교황 바오로 3세가 1537년 6월 1일 ‘인도를 위한 규정’으로 ‘알티투도(Altitudo)’라 부른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와 동시에 함께 살고 있지만 그의 첫 아내가 누구인지를 기억 못할 경우에 남자가 세례를 받는다면 아내들 중 아무나 선택하여 혼인 합의를 새롭게 하여 혼인하고 나머지 아내들은 내보내야 한다. 만일 합법적인 첫 아내를 기억한다면 그녀와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로마니 폰티피치스(Romani Pontificis)’는 1571년 8월 2일 교황 피우스 5세가 발표한 ‘인도를 위한 규정’으로 여러 아내들과 동시에 살고 있는 남자가 세례를 받을 경우에 그와 함께 세례를 받는 아내를 선택하여 혼인하고 나머지 아내들은 내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1585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발표한 교황령인 ‘포풀리스(Populis)’는 ‘인도, 앙골라, 에티오피아, 브라질을 위한 규정’으로 비세례자 남녀 사이에 맺은 혼인에 관한 법령이다. 법에 의한 질문을 법 규정대로 할 수 없거나 정한 기한 내에 회답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에 의한 질문을 관면 할 권한을 교구장과 주임 사제와 예수회의 고해 사제에게 부여하고, 또 전 배우자와 헤어진 새 입교자가 새로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교황령의 규범은 개종자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오로 특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으로 법제화되어 1917년 법전 제1125조에 삽입되었으며, 현교회법에도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현 교회법의 규정에 의하면 일부다처혼을 위한 규정에는 여러 명의 아내와 동거하는 남자가 세례를 받는 경우에 첫째 아내나 혹은 다른 한명의 아내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보내되 떠나보내는 아내의 생계가 유지되도록 합당한 배려를 해야 한다. 감금이나 박해로 인한 혼인 해소는 ‘포풀리스’에 근거한 규정으로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이 감금이나 박해로 인하여 동거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